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발의일자 : 2019년 11월 13일
- 나. 발 의 자 : 최봉희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0일
- 라. 상정일자 :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19.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봉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안 제8조~제12조)

-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안 제13조~제16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정옥)

- 본 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통안전법」에
서 위임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와 위촉 해제
 - 안 제8조 ~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 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 제1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
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 폐
지를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 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용 중인 「서울특별
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
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안임.
- 검토 결과,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통안
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례는 위원회 명칭, 위원 수 등이 「교통안전법」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
과 관련 기관과의 교통협력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

진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일

발의자 : 최봉희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위원장의 직무(안 제8조)
- 마. 위원회 회의 등 운영(안 제9조~제12조)
- 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안 제13조~제16조)
- 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9. 11. 15. ~ 11. 19.)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 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서울특별시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

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

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에 따라 수립한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계획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